

국유재산(여성의류 및 잡화) 유상사용허가서(안)

성명(업체명):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재산의 표시: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중앙후생관
중층(35.41m²)>

위 국유재산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붙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그 유상 사용·수익(이하 “사용”이라 한다)을 허가합니다.

2026. . .

보건복지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 직인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이 국유재산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직원 및 방문객의 후생·편의를 위한 중앙후생관 “여성의류 및 잡화” 설치 및 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0000년 0월 0일부터 0000년 0월 0일까지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연 원(W 원: 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다만, 2차 년도부터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료는 보건복지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국유재산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② 분할 납부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3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및 6항에 따른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거부) 유상사용허가서 제1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사유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가격결정 및 취급품목) ① 여성의류 및 잡화 판매점의 이용요금은 오송읍 내 동일업종 시중가 수준으로 하여야 하며, 품목별 요금 등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 및 요금 등에 대한 정보를 매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는 요금을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가격 조정 등을 지시할 수 있으며, 사용인은 합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주요 취급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 의류
2. 액세서리 및 잡화류

제7조(보험가입) 사용인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즉시 보험가입증서(사본)를 지원센터에 제출한다. 다만, 지원센터에서 화재보험(건물)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원센터가 청구한 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표찰의 부착) 사용인은 사용허가 후 지체없이 본인의 비용으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성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①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보존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여성의류 및 잡화 운영에 필요한 인테리어·기자재 및 설비 등 모든 경비는 사용인이 부담한다.

제10조(사용허가재산의 공과금 등)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전기, 수도 등 사용료는 지원센터에서 고지한 부담금액에 따라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지원센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사용허가재산의 원상변경
3. 사용허가재산에의 시설물 설치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4.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을 위배한 경우
5. 납부 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국유재산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지원센터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7. 유상사용허가서 내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8. 기타 국유재산법령 또는 지원센터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사용허가 취소시의 보상) 이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지원센터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신청) ① 사용인은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취소신청을 한 뒤 2개월간 사용허가는 유효하고 그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유효기간 중 후임업체가 선정된 경우 선정일로부터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한 경우 일할 계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

제15조(사용재산의 반환) ①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는 사용기간 종료 후 또는 허가취소일 이후 7일 이내 지원센터 직원의 참여하에 원상태로 반환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 차기 계약자와 합의에 의해 인계할 경우, 원상변경에 대한 지원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원센터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지원센터에서 원상복구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의 갱신신청) ① 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후 사용인이 계속하여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만료 1개월 전에 사용허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갱신신청 할 경우 지원센터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 갱신여부를 결정한다.

제17조(변상금 등의 징수) 사용인이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허가 취소 후 계속해서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가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인이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원센터는 「국유재산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제18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을 위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불결 등으로 이용객 등의 건강을 해치거나 시설물의 훼손, 전기·가스·화기 등의 사용 부주의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치료비 및 복구비의 변상은 물론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9조(세부운영수칙 준수) 사용인은 첨부된 ‘세부운영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20조(지시·감독)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원활한 행정지원 및 직원의 후생복리 증진을 위해 지원센터의 지시·감독을 받는다.

제21조(재임대 금지) 사용인은 제3자에게 재임대할 수 없다.

제22조(자구의 해석) 이 허가조건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결정에 따른다.

본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허가서 2통을 작성하여 “지원센터”와 “사용인”은 확인하고 서명(또는 기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1]

세부운영 수칙

1. 여성 의류 및 잡화 판매점 운영시간은 평일 주중(월~금) 09:00~18:00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시간의 단축 및 연장은 지원센터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지원센터는 일체의 시설 설치비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에 수반되는 모든 경비는 사용인이 부담한다.
3. 매출 감소 및 손실을 사유로 사용료의 조정을 요구하거나 손실 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
4. 상품 및 금품 도난 등의 사고와 청소는 사용인의 책임이며, 지원센터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경우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사용인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기관 및 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한 지원센터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사용인은 지원센터의 승인하에 CCTV 등 매장 내에 보안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보안설비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리는 안내 문구를 매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
7. 사용인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에 간판 등 홍보물 설치, 판촉 행사 등 홍보 활동 등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센터의 승인하에 하여야 한다.
8. 사용인은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책 등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9. 변동사항(판매가격, 판매품목, 운영시간 등)이 있을 경우 지원센터와 협의 후 시행한다.
10. 사용인은 허가받은 재산에서 화기류(가스, 버너 등) 및 전기밥솥 등을 사용하여 개인적인 취사행위를 할 수 없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본인)는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여성의류 및 잡화”』 유상사용허가에 있어 부패 없는 깨끗한 사업문화를 조성하고 청렴사업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1. 특정인의 선정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모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 시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을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도 감수하겠으며, 이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사업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위반 시 가해지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 등의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의 조치에 대하여 당사(본인)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본인)를 배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〇〇년 〇월 〇일

서약자 :

(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 귀하